

제258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20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1-76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1
2021-77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행정과)	5
2021-78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7
2021-79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과)	9
2021-80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3
2021-81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17
2021-82	거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21
2021-83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	23
2021-8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29
2021-85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37
2021-86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43
2021-87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51
2021-88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57
2021-89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61
2021-90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69
2021-91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복나눔과)	73
2021-9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	79
2021-93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85
2021-9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93
2021-95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123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7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필수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

1) 정부합동평가 대상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조·제2조)

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

나) 개정 조례 2건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행정과)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농업기술센터)

2)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4조)

가) 수수료 납부수단을 제한⇒ 납부수단 다양화 또는 해당규정 삭제

나) 개정 조례 2건

(1) 「거창군 수입증지조례」(재무과)

(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건설과)

나.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

1)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 보완(안 제5조·제6조)

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현행: 특별교통수단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규정

(2) 신설: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특별교통수단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로 기능 대행 규정 명확화

나)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1) 위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전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만 인용하던 것을 위임 시행령·시행규칙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6. 23.~7.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거창군 수입증지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방법)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따르되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행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2021-7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수당: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2)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의 출장 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 3)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27.~8.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거창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과 관계있는 출장할 때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1-7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탁교육 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위반 시에 위탁교육 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할 경우 그 반납 기준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을 정함(안 제2조)

- 1) 대상: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 3)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8.~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거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7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출향인의 범위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향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1) 현행: 거창군 출신인 사람
- 2) 변경

- 가)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나.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함(안 제3조)

다.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라. 출향인의 지위, 포상, 준용, 시행규칙 삭제(현행 제3조, 제6조~제8조)

- 1) 법령 및 조례 중복·재기재에 불과한 불필요한 규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본예산 41,88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7.~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 주요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
2.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
3. 군 농산물·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과 그 가족의 고향 방문 사업
5. 출향인과 향우회 대상 간담회
6. 그 밖에 군과 출향인·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군수는 군과 출향인·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향우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군 주최의 간담회, 고향 방문 사업, 군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식비, 숙박비, 차량 임차비 등 경비와 홍보 기념품 지원
3. 향우회 정기총회 시 홍보기념품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문화체육 행사 보조금, 교류협력 행사 필요 경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4조(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42	42	42	42	42	210

3. 관련 의견

전국향우연합회체육대회 시 보조금 지급 및 향우회 자녀 고향 방문사업 등 교류행사 시 식비, 숙박비, 버스임차료 등(행사 운영비)을 지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모범 향우 감사패 제작: 6,380천원

나. 차량 임차

1) 고향희망심기 고향방문(향우체육대회 등): 8,400천원

2) 지역향우회 정기총회 등 참석: 2,100천원

다. 향우 고향 문화탐방: 8,000천원

라.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17,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8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추가 등록함에 따라 여성자율방범대를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자율방범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800천원 추경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7.~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 조직”을 “주민 조직(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법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u>주민 조직</u>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6조(포상) <u>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법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u>주민 조직 (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삭제></p>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여성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1-8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5,000천원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27.~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지원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1-8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7.~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 대한 봉사과 거창군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
4. 국가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8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금 지급으로 이장의 사기를 복돋우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함(안 제2조)
- 나. 읍면장 추천, 선발기준, 정원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다. 장학금액, 지급, 지급정지 사유를 정함(안 제6조~제8조)
 - 1) 금액: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
 - 2) 지급정지: 이중 지급 제한, 이장신분 상실, 장학생의 퇴학 등
- 라.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규칙을 삭제함(현행 제9조·제10조)
 - 1)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개정) 제4조에 따라 이미 실효된 규정임
 - 2) 규칙: 「지방자치법」 제23조 중복·재기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3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7.~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
2.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것

제3조(추천)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1.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

2. 학교 간
3. 읍·면 간
4. 이장 한 명당 선발 자녀 수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
3.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안 제6조제1항

나. 비용발생 요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1년도 이장 자녀 장학금 본예산 3백만원 확보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8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표준수수료)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요청에 따라 누락된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 정비함(안 제3조·별표 1)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수수료 삭제

나. 수수료 징수방법 확대함(안 제5조)

다.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9.~7.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등은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수입증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증명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준	금액
1. 신상에 관한 사항		
가. 이장재직사실확인	1통	<u>500</u>
나. 재직(퇴직,경력)증명	1통	1,000
다.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라.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사실확인	1통	1,000
2.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가. 표준주택 설계도면	1호	1,500
나.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1건	1,000
다.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800
라.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사. 체비지 분할 신청	1건	1,000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000
자.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건	1,000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1,000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락	1건	1,000
3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800
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구 분	기준	금액
4.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가. 급수공사 설계 1)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3)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2,000 4,000 설계금액의 100분의1
나. 시공자재 검사 1)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 4,000
다. 준공검사 1)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 4,000
라. 정수처분 해제 1)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 4,000
5.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건	500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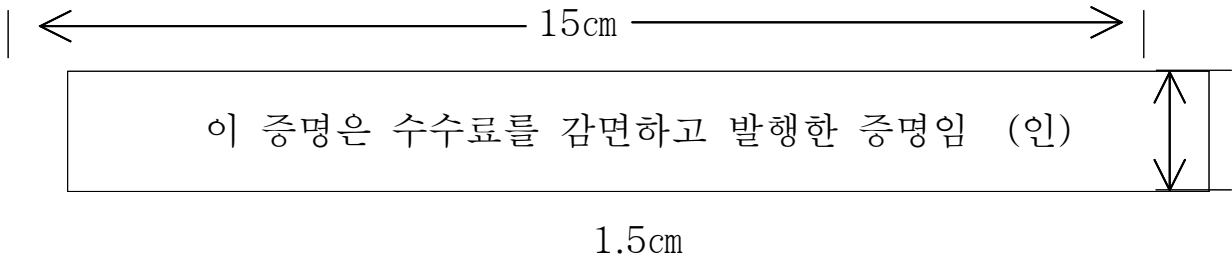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500
3) 제적등본	1통	500
4) 제적초본	1통	3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6) 토지(임야)대장	1통	300
	추가 1장당	10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	1통	2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300
10)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500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8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택시관광 및 관광지 홍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별표)

나.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정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7조

2) 「관광진흥법」 제47조의4·제76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3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28.~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 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u>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u><신 설></u></p>	<p><u>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u></p> <p><u>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u>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별표]

관광사업 지원기준(제4조 관련)

사업분야	세부사업
1. 관광객 유치	가. 국내외·단체 관광객 유치설명회·팸투어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다. 관광택시 운영 라.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마. 지역 문화유적·관광지의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개발·판매	가.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기획·발굴·판매 나.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음의 사업 1)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2)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3. 관광상품·관광 홍보	가. 관광홍보 마케팅 나. 관광시설의 홍보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 지원 1) 스탬프 투어자 2) 팸투어 참여자 3)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의 소셜미디어 홍보 참여자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 관광복지 증진	가. 제4조의2 각 호의 사업 나. 그 밖에 관광복지 증진 사업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관광택시 운영 등 관광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제4조,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11	30	30	30	30	131

3. 관련 의견

거창군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거창투어 관광택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0백만원

나. 관광택시운영 지원: 2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8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자의 주차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며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수승대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
- 다. 퇴장 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
- 라. 주차장 및 시설 이용료 변경함(안 별표 1)
- 마.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변경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69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8.~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 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 데크·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썰매장, 축제극장,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 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야영장, 오토캠핑장”을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 각 호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인근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7. 야외 물놀이 시설에 입장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외에 들어가는 경우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4. (생략) 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축제극장을 말한다.</p> <p><u>제4조(시설이용료) ①~② (생략)</u> <u>③ 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u> <u>④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u> ⑤ (항삭제 2015.6.10.) <u>⑥ (생략)</u></p> <p><u>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차량과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u></p>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4. (현행과 같음) 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데크·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썰매장, 축제극장,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말한다.</p> <p><u>제4조(시설이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u> <u><삭 제></u> <u>③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u> <u>④ (현행과 같음)</u></p> <p><u>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u>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인근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p>

② (생 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13. (생 략)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 (생 략)

<신 설>

<신 설>

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1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7. 야외 물놀이 시설에 입장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외에 들어가는 경우

8.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별표 1] 시설이용료 기준

가. 주차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u>3시간 이하</u>	<u>3시간 초과~7시간 이하</u>	<u>7시간 초과~24시간 이하</u>	비고
소형차	<u>무료</u>	<u>2,000</u>	<u>5,000</u>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대형차	<u>무료</u>	<u>4,000</u>	<u>10,000</u>	승합차(버스), 화물차(트럭)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u>카라반캠핑장</u>	비고
이용료	<u>15,000</u>	<u>30,000</u>	<u>30,000</u>	- 1박 기준 - <u>1박 이용시간: 그날 14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u>

다. 썰매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개인	<u>6,000</u>	<u>7,000</u>	<u>8,000</u>
단체	<u>5,000</u>	<u>6,000</u>	<u>7,000</u>

라. 축제극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u>3시간 이하</u>	<u>초과 시간당</u>	<u>1일</u>
<u>이용료</u>	<u>50,000</u>	<u>10,000</u>	<u>100,000</u>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 기준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100퍼센트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4일~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80퍼센트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70퍼센트
사용예정일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50퍼센트

- 1) 2일을 한 번에 예약 후 취소할 경우 반환기준일은 예약 첫날로 한다.
- 2) 반환기준 시간은 24시로 한다.
- 3)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8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명예수당 대상자에게 효도권 이용비 및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참전명예수당 증액,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대상자의 복지향상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의2·제7조의3)

- 1) 효도권 지원사업: 목욕 및 이용·미용에 드는 비용 지원
- 2)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 지원

나. 명예수당 지급액 증액 및 지급대상 신설(안 제10조)

- 1) 증액: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 월 15만원
- 2) 신설: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195,800천원(110,800천원 추경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1.~8.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효도권 지원사업자는 효도권 이용자가 그달 이용한 효도권 이용명부를 근거로 효도권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효도권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효도권 이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효도권 이용명부의 허위작성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권을 이용하거나 효도권 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

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③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용 신청 및 중단·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 나목) 중 “가목”을 “가목·나목”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나.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

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효도권 지원사업자는 효도권 이용자가 그달 이용한 효도권 이용명부를 근거로 효도권 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효도권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도권 이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효도권 이용명부의 허위작성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권을 이용하거나 효도권 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p>

현행	개정안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u><신설></u></p> <p>나. 보훈명예수당: <u>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u>,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u>월 10만원</u> <u><신설></u></p> <p>나.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p> <p>2. 사망위로금: 50만원</p>	<p>는 바에 따라 한다.</p> <p>③ <u>복지 스마트워치 가입 비용 신청 및 중단·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u></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p> <p>나. <u>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u></p> <p>다. 보훈명예수당: <u>가목·나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u>,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u>월 15만원</u></p> <p>나. <u>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u></p> <p>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p> <p>2. 사망위로금: 50만원</p>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효도권·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 2)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증액

나. 관련조문: 제7조의2·제7조의3·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군비	644,162	887,923	887,923	887,923	887,923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효도권 지원비용: 60,000천원
- 2.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비용: 25,000천원
- 3. 명예수당 증액: 110,800천원(제3회 추경예산 편성)
 - 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09,080천원
 - ⇒ 제3회 추경반영 금액: 100,000천원
 - 나.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 명예수당: 138,000천원
 - ⇒ 제3회 추경반영 금액: 10,800천원
 - 다.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20,4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1-8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의 규모, 회원 수, 활동양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군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2조)

1)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

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43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28.~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

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지원대상), 제3조(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439	450	450	450	450	2,239

※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은 제외

3. 관련 의견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대한노인회 거창군 지회 추진 사업 지원(16개사업): 439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8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 및 미흡한 절차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영아 등 화장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4조)

- 1) 신설: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2) 삭제: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다.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 신설(안 제6조제5항)

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함(안 제3조·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3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8.~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제1호·제3호서식)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조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 및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전 제2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 제3호) 중 “군내”를 “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

제4조제2호 중 “법령에 의하여”를 “법령 및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망자 및 신청인의 성명란에 “(남/여)”를 각각 신설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사망자 및 신청인의 성명 다음에 “성별”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 6.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p>제3조(지원대상) <신 설></p> <p>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p> <p>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현행	개정안
<p>치른 연고자</p> <p>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u>한함</u>)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p> <p>3. <u>군내에</u>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u>실시한</u>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치른 연고자</p> <p>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u>한정함</u>)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p> <p>3. <u>군에</u>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u>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u></p>
<p>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p> <p>2. 그 밖에 다른 <u>법령에 의하여</u>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p> <p>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p>	<p>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p> <p>2. 그 밖에 다른 <u>법령 및 조례에 따라</u>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p> <p><삭제></p>
<p>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 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u>시체(개장유골)</u>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p>	<p>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 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u>시신(개장유골)</u>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p>

현 행	개 정 안
<p>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근거

가. 비용발생 요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

나. 관련 근거: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예외 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은 연 3백만원으로 연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행복나눔과장 이 호 현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9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의 준공으로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범위를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여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공원묘지 사용기준 정비(안 제3조)

- 1) 신설: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 사용범위 모든 군민으로 확대
-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따라 삭제(안 제10조·제11조)

- 1) 권한위임: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에 규정
- 2)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3조 중복·재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28.~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 제목 및 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장분묘로서”를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① 공설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대상자) <u>① 공설공원묘지는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설공원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이 아닌 관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해당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할 공설공원묘지의 선정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u></p> <p>③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로서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의 <u>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u> 2.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 3. 제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4. 제7조에 따른 유골반환 신청, 사용료등 반환</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① 공설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p> <p>③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1-9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함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
 - 1) 설치 및 위치, 업무 및 시설, 지원대상, 조직
-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6조~제9조)
- 라.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289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7.30.~8.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통합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강남로1길 17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
2.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센터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

수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센터, 거창경찰서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위탁 운영비 지원
- 나. 관련 조문: 제10조(위탁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289	293	296	300	303	1,481

- 가. 국도비·군비 53:47 매칭사업
- 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상승분은 연 1.2퍼센트 적용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02백만원
2.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59백만원
3.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14백만원
4.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12백만원
5.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12백만원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11백만원
7.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70백만원
8.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2.5백만원
9.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사업: 6.5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9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시장 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해당) 주차요금이 저렴하여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과 요금 감면 차량의 경우 10원 미만 단위로 정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안 별표 1)

구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내	10분 초과당	1일 주차	주간제	야간제
현행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	500	250	5,000	50,000	35,000
		노외 주차장	300	150	3,000	30,000	21,000
개정안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용어 변경(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29.~8. 18.

나) 예고결과: 의견 일부반영(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경 남 거 창 지 역 자 활 센 터	-2년간 주차관리를 해오며 주차를 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잡힘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분 이하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삭제	-5분 이하 주차·정차로 인한 민원이 일주일에 2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5분 이하 주차·정차에 한정해 주차요금 면제로 주변 상권 보호	미반영
	-요금 감면 시 50원 단위로 정산됨 -주차요금 10분 초과당 200원 → 30분 초과 시 500원 적용 -30분 초과 시 500원 적용 및 감면 비율 50% → 60% 조정	-현행 조례상 요금 감면 시 1원 단위로 정산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미반영
	-주차요금 적용 제외 문구 수정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주차요금 적용 제외” ⇒ “주차 제한”	반영
	-주차요금표 ‘구분’ 추가	-‘구분’ 적용 시 5분 이하 주차·정차에 한정해 주차요금 면제에 따라 이동 주차가 발생할 수 있음	미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가</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가</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등이</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등이</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현행과 같음)</p>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금액: 원)

구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하	10분 초과당	1일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1.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 최초 30분으로 봄
2.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분 이하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3. 주차 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9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창포원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관리 운영하고 지역 여건이나 국내 환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한 시설별 운영 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창포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1) (현행)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2) (변경)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법률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 적용 규정 및 용어 등 정비(안 제1조·제2조·제5조·제6조)

다. 정기휴원일 명확화, 임시휴원일 규칙으로 위임(안 제8조)

라. 시설별 운영 시간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9조)

마. 자전거 이용료 및 감면 근거 신설(안 제20조·별표 1·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8조의5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28.~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거창창포원”을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으로 “자연체험, 자연학습”을 “정원문화 체험”으로 한다.

제4조 중 “설치”를 “관리”로 한다.

제5조·제6조, 제8조·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창포원의 등록 및 위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

제6조(기능) 창포원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휴원일) ① 창포원의 정기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원일에도 야외 수변생태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휴원할 수 있다.

제9조(개방 및 운영 시간) ① 창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운영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을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20조 조 제목“(카페 입장료 등)”을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본문 및 제2항 중 “입장료”를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로 한다.

별표 2 키즈카페 입장료 란을 제1호로 하고 제2호 자전거 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 “키즈카페 입장료 감면기준(제20조 관련)”을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감면기준(제2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황강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용객의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u>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u> 등을 말한다.</p> <p><u>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제5조(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위치)</u> ① 군수는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의2에 따라 <u>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공간으로 거창창포원을 조성한다.</u></p> <p>②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p> <p><u>제6조(기능)</u> 창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u>생태자연관광 활성화</u> 2.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u>생물종 다양성 증대</u> 3. <u>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u> 	<p><u>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u>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u> 등을 말한다.</p> <p><u>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창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제5조(창포원의 등록 및 위치)</u>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p> <p><u>제6조(기능)</u> 창포원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p>

4.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5. 키즈카페 및 북카페 등 운영

6.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개원 및 휴원) ① 창포원은 매일 개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창포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

제9조(운영·관람시간) ① 창포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전 5일까지

제8조(휴원) ① 창포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원일에도 야외 수변생태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휴원할 수 있다.

제9조(개방 및 운영 시간) ① 창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포

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제20조(카페 입장료 등) ① 키즈카페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키즈카페의 입장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등) ①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2. 자전거 이용료(제20조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추가요금
4인승, 6인승	1시간	4,000원	초과 30분당 500원
2인승		2,000원	
1인승, 어린이용		1,000원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94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1) 용어 변경(안 제20조의2·제48조·제61조)
- 2)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 제8조·제31조·제33조·제35조·제58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 신설(안 제15조제1항)

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완화적용 사유 삭제(안 제20조의3제3항)

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정비(안 제15조의2·제26조·제30조)

- 1)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2)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 3) 이행보증금의 예치

마. 법령위임 필수조례 신설(안 제16조의2·제57조의3)

- 1)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 2)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 30퍼센트

바.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범위를 법에서 정한만큼 최대한 확대하여 반영(안 제27조)

사. 경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지적사항 정비(안 제57조의2·제61조의5·제71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2)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심의 종결 후 30일 후

아. 공동위원회 준용 신설(안 제74조의2)

자. 법령개정사항 반영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개정(안 별표 1~별표 5, 별표 12, 별표 14, 별표 18, 별표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0조·제28조·제28조·제59조·제6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5조·제43조·제57조·제59조·제72·제76조·제78조·제85조·제93조·제113조의3, 별표 1의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30.~8. 19.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기존 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 4. 녹지지역: 0.4
-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년 전자유기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요양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9조 조 제목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보호지구안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전통시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8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기존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군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을 이하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제6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5(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1조(회의록의 공개) 영제113조의3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제75조)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 별표 18,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거창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u></p>	<p><u>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u></p>
<p><u>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u></p> <p><u>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u></p> <p><u>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p><u>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u>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u></p> <p><u>⑥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u></p>	<p><u>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u></p> <p><u>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u>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u></p>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신 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4.10.01>
- 2.~7. (생략)

<신설>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6.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 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신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23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민동의가 있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삭 제>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4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기존 부지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제2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2. (생략)
-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15. (생략)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삭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

- 1.~22. (현행과 같음)

<삭제>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15. (현행과 같음)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 (생략)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15. (현행과 같음)

<삭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
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
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
장, 장의사

2.~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
소 및 장례식장

7.~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로 쓰는 시설

16. (생략)

<신 설>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
축제한) <신 설>

<삭 제>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
축제한) 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
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
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계
임제공업소, 장의사

2~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7.~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

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
호의 장례시설

제49조(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조례가 정
하는 건축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몰, 대형점

5.~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③ (생략)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7. (현행과 같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7조의2(전통시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 (생략)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가.~나. (생략)

② (생략)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군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 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균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균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제61조의5(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균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성으로 의결한다.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7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1조(회의록의 공개) 영제113조의 3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74조의2(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산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집회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마목(동물원 제외)의 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계 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도료류 판매소(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삭 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식물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계 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아목(주기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 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기존주택은 증축·개축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

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삭 제>~~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삭 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 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2. 영 별표 19 제2호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신 설>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체험관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95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1. 제안 이유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대하며 향노화힐링특구에 옥외광고물등 표시 특례를 정하여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신설함(안 제5조의2·별표 1)

1) 행정안전부 협의 내용

(가) 위치: 가조면 일부리 1307

(나) 종류: 지주 이용 간판 1개

(다) 규격: 10미터×5미터×10미터

2) 향노화힐링특구에서 표시가능 광고물등은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한정

3)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근거 신설(안 제19조)

다.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사유 명시함(안 제26조)

라. 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0조의2·제10조의4·제20조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6. 15.~7.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별표 3)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에서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와 면적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나. 한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가.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나.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다.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3. 네온류, 전광류 또는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한 결과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제25조제2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는 제25조제5항”을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으로 하면 같은 조 제6항 중 “제제25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중전 별표 2) 중 그 밖의 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u>성인지 감수성</u> <u>항상 교육 포함</u>

별표 7(중전 별표 6)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p>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p> <p>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p> <p>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p> <p>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한 경우</p>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3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p> <p>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p>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u>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p> <p><u>②</u> 제1항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2. 높이와 면적</p> <p><u>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u></p> <p><u>나. 한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u></p> <p><u>다.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u></p> <p>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p> <p><u>가.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u></p> <p><u>나.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u></p> <p><u>다.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u></p> <p>3. 네온류, 전광류 또는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됨</p> <p><u>③</u>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한 결과는 별표 1과 같다.</p>
<p><u>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u> ①~③ (생략)</p>	<p><u>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u> ①~③ (현행과 같음)</p>
<p><u>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u>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p>	<p><u>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u>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p>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 (생략)

③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5. (생략)

<신 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제25조(교육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5. (생략)

③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5.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의 위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

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

<p>③·④ (생략)</p>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u>별표 6</u>과 같다.</p>	<p><u>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u>별표 7</u>과 같다.</p>
--	--

[별표 1]

향노화힐링특구 광고물등 표시 기준(제5조의2제3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 (가로×세로×높이)	주소	이격거리
지주 이용 간판	1 (2)	10미터×5미터×10미터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7	640미터